

수원지방법원 2024. 10. 10 선고 2024가단55705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9. 5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0.

주 문

-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11. 10.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.
-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1. 12. 28. 접수 제1975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연운희

별지